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262



TEL. (02)909-0497
FAX. (02)909-0888

공사 수의계약 건적제출 공고

공고 번호: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6 - 38호

사 업 명 : 2026년 북한산국립공원 육상탄소흡수원 구축공사

개찰일시: 2026. 9. 1.(화), 11:00

공고기관: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이 안내서는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계약에서 입찰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안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행정과 김연수(☎ 02-940-3707)
-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자원보전과 김나영(☎ 02-940-3733)
- 기업 규제에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033-769-9357)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소액수의계약 건적서 제출 안내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 과업내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6 - 38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4.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2026년 북한산국립공원 육상탄소흡수원 구축공사

1.2. 공사현장: 북한산국립공원 일원

구 분	위 치	비 고
1	경기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14-7	북한산국립공원 일원
2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산27, 산27-5	
3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43-111	
4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산3-1	
5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산1-1	
6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산77-1	
7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40-9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1.4. 공사개요

1.4.1. 공사구분: 전문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00%)

※ 상호시장 진출 불허용 사유

- 근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 제1항
- 사유: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

1.5. 추정금액: 금180,000,000원

1.5.1. 기초금액 180,000,000원

1.5.2. (추정가격) 163,636,364원 + (부가가치세) 16,363,636원

1.5.3. (관급자제비) 0원

1.6. 공사유형: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나라장터)을 통하여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2.1.1. 소액수의(총액, 견적서 제출),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2.1.2. 공동사업은 불허합니다.

2.2. 지역제한 경쟁입찰, 업종제한 경쟁입찰 대상 사업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사업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사업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사업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1,205,283원)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64조의3에 의거 지출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2.7.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사업**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883,909	2,489,171	247,545	1,205,283	2,341,616	0	0
합계(A값) = 8,167,524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3.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64조의3에 의거 지출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2.7.4.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 및 미보완 시 모든 책임은 수급업체에 있으며, **관련 금액은 감액 정산**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 보완 요구』에 대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

하오니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0.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1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12. 우리 공단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전자입찰 및 개찰일시

3.1.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2026. 8. 26.(수) 10:00

3.2.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9. 1.(수) 10:00

3.3. 개찰일시: 2026. 9. 1.(수) 11:00

3.4. 개찰장소: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지연 및 연기 가능

4. 입찰 참가 자격 및 요건

4.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4.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에 등록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4.3.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4.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2】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5.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5. 입찰참가 등록 관련

- 5.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5.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5.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5.1.3.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5.1.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함)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6.1. 이 사업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사업계획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6.2. 사업계획서 및 시방서 열람 : 나라장터 공고 첨부

- 6.2.1. 설계서 등 자료 문의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김나영 주임(☎ 02-940-3733)
- 6.3.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6.4. 해당 입찰 관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 제3항(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의거 **설계서의 무단사용을 금지**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7.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7.1.1. 7.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7.1.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천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7.1.3.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7.1.3.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분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7.1.3.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비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용 적용기준에서 정한 비율

7.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3.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1. 입찰참가신청

8.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제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8.2. 입찰보증금

8.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2.2. 상기 8.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8.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8.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8.2.6.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8.2.7.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인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9.2.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26. 10:00 ~ 2026. 9. 1. 10:00**

9.2.1.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9.2.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9.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 2026. 9. 1. 11:00**

10.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4.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5.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1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께서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계약이행보증

- 12.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서 제출

- 13.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계약서 초안 송신 시 첨부)”를 전자계약서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4.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14.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 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14.2.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14.3.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15.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15.2. 15.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5.3. 상기 15.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16.1.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6.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16.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16.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6.4.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16.4.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16.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하도급 관련사항

- 17.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 17.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7.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7.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 18.1. 본 공사의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붙임1】)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8.2.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18.3.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18.4.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18.5.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8.6.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7.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033-769-9541)

【붙임1】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③ 낙찰예정자는 제②항 제1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 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제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033-769-96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

는 아니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특독(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정책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반 시 제재조치)

-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안전 · 보건 이행점검)

-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 · 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자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자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험성평가표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00-00		
공정명	세부작업명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 일	완료 일	담당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통신케이블피복 공정	적연	기계적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양전사고(적당, 베인, 직선, 등)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높음)	4 (중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적연	기계적요인	지게차 과속 및 추진시 사람충돌	안전보건규칙 제179조 [전조등 및 후미등]		5x4	5 (높음)	4 (중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적연	기계적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질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5x4	5 (높음)	4 (중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적연	화학적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호흡(흡입)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높음)	4 (중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적연	작업특성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516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높음)	4 (중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적연	작업특성요인	인력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 중 과로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663조 [중장품의 제하]		5x4	5 (높음)	4 (중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적연	작업환경요인	고열, 고온, 고습도의 작업환경에 의한 열사병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254조 [태양 등의 방호]		5x4	5 (높음)	4 (중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0 0 0 (서명)
확인자 : 0 0 0 (서명)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허가대상 작업(제4조 관련)

-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 기계기구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향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별지 제2호 서식]

안전작업 허가서(통합)

작업종류 : ☒ 위험기계작업 ☒ 고소작업 ☐ 화기작업 ☐ 정전작업 ☐ 중장비작업 ☐ 헬기작업

사업장명 : 000사무소 000분소

작업인원 : 000 (서명) 000 (서명) 000 (서명) 000 (서명) 000 (서명) 000 (서명)

허가일자 : 2026. 00. 00.(월)

작업기간 : 2026. 00. 00(화) 13:00 ~ 00(수) 18:00까지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작업장소: 000		기계·설비: 동력톱, 사다리			
작업개요		사다리를 이용하여 높은 위치에 있는 위험수목 제거					
해당작업 안전수칙 교육 여부		☒ 실시 ☐ 미실시		교육내용			
안전보건 조치사항			해당 여부	확인 결과			
공 통	보호구 착용	☒	☒	화 기	소화기 비치	☐	☐
	조명 장비 구비	☒	☒		주변 가연성물질 제거	☐	☐
	사용 기계·기구·설비 상태 점검	☒	☒		화재감시자 배치	☐	☐
	사용 기계·기구·설비 방호조치 여부	☒	☒		신호수·유도자 배치	☐	☐
고 소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중 장 비	작업계획서 작성	☐	☐
	추락방지망 설치 여부	☐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	☐
	2인 1조 작업	☒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정 전	주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헬 기	헬기 화물망 등 상태 점검	☐	☐
	전선 피복 손상여부 확인	☐	☐		통신장비 구비	☐	☐
비 고 (추가 조치사항 등)							
		신청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사업장명 : 000사무소 000분소

작업인원 : 000 (서명) 000 (서명) 000 (서명) 000 (서명) 000 (서명) 000 (서명)

허가일자 : 2026. 00. 00.(월)

작업기간 : 2026. 00. 00(화) 13:00 ~ 00(수) 18:00까지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작업장소: 청사 지하 1층		설비(기기): 저수조			
작업개요		저수조 청소					
해당작업 안전수칙 교육 여부		☒ 실시 ☐ 미실시		교육내용			
밀폐공간 조치사항			해당 여부	확인 결과		해당 여부	확인 결과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 부착		☒	☒	호흡용 보호구(승기마스크 등) 비치		☐	☐
특별교육 실시 여부		☒	☒	소화기 비치		☐	☐
조명 장비 구비		☐	☐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	☒
측정기, 통산·구조 장비 등 상태 점검		☒	☒	환기 실시		☐	☐
보호구 착용		☒	☒	감시인 배치		☒	☒
가스측정 결과	측정물질	측정농도	측정일시	측정자명	적정공기 기준		
					1. 산소: 18% ~ 23.5% 미만		
					2. 황화수소: 10ppm 미만		
					3.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4. 탄산가스: 1.5% 미만		
밀폐공간 내 출입자 명단	성 명	출입시간	서 명	성 명	출입시간	서 명	
		~			~		
		~			~		
		~			~		
비 고 (추가 조치사항 등)							
		신청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